

## 1. 개정이유

야생동물의 질병진단, 역학조사 등의 야생동물 질병관리를 전담기관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사육시설 내 야생동물 질병관리 조치를 확대하고, 서식지 내 야생동물 질병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함) 개정됨(법률 제16609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에 따라, 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환경부장관에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으로 변경하고, 사육시설 내 야생동물 질병관리 조치 확대에 따라 조치명령 등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고, 서식지 내 야생동물 질병관리를 위한 예찰지역 설정, 피해예방시설 설치, 포획단 운영 등 세부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환경부장관에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으로 변경(안 제44조의5, 안 제44조의7)

나. 사육시설 내 야생동물 질병관리 조치 확대에 따라 조치명령 등 절차 및 방법을 규정(안 제44조의8)

- 1) 기관·단체에서 사육하는 야생동물에 대한 질병관리 조치가 살처분에서 예방접종·격리, 출입제한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조치명령 등 이에 대한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고자 함

- 다. 서식지 내 야생동물 질병관리를 위한 예찰지역 설정, 피해예방시설 설치, 포획단 운영 및 조치결과 보고 등 세부 절차 및 방법을 마련(안 제44조의12)
- 라. 야생동물질병진단기관 지정취소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마련(안 제78조 별표12 개정)
- 마. 그 밖에 멸종위기야생생물 종명 수정 등 법령 운영 시 미비점을 개선함.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4조의4제6항”을 “법 제34조의7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환경부장관은”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환경부장관”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으로 한다.

제44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4조의9제1항”을 “시·도지사는 법 제34조의9제1항”으로, “따른 역학조사는”을 “따라”로,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를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에 역학조사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서 야생동물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44조의7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같은 시·도 안에서 야생동물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44조의7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관”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시·도지사에게”를 “시·도지사 및 법 제34조의9제1항제3호에 따라 역학조사를 요청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시·도지사가”를 “시·도지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로 한다.

3. 다른 시·도에서 발생한 야생동물 질병이 해당 시·도의 행정구역과 역학적으로 연관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제44조의8의 제목 “(살처분 명령 등)”을 “(예방접종·격리·출입제한·살처분 명령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본문에 따라 살처분”을 “각 호에 따라 예방접종·격리·이동제한·출입제한·살처분”으로, “질병에 걸린”을 “질병에 걸리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살처분”을 “예방접종·격리·이동제한·출입제한·살처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이동 제한·격리”를 “예방접종·이동제한·격리”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34조의10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할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별지 제40의6호 서식의 예방접종·격리·이동제한·출

입제한·살처분 명령서에 따라 대상 장소, 기간 등을 미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⑥ 법 제34조의10 제2항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공무원”이란 영 제23조의4에 따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또는 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⑦ 그 밖에 예방접종·격리·이동제한·출입제한·살처분 명령에 관하여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4조의10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도지사는 동 조 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의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12(서식지의 야생동물 질병 관리) ①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가 법 제34조의12제1항 각 호에 따라 예찰·출입통제 및 소독 등 확산 방지·포획 또는 살처분 조치의 대상이 되는 야생동물은 제44조의8제1항에 해당하는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야생동물로 한다.

②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법 제34조의12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할 수 있다.

1. 제34조의12제1항제1호에 따라 야생동물 질병 예찰을 위해 야생동물 서식지 등을 예찰지역으로 설정
  2. 제34조의12제1항제2호에 따라 출입통제 등 확산 차단을 위해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
  3. 제34조의12제1항제3호에 따라 야생동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야생동물의 포획을 위해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운영
- ③ 법 제34조의12제1항에 따라 조치한 경우에는 제44조의8제1항에 해당하는 질병에 감염된 야생동물의 사체는 제44조의9, 제44조의10 및 제44조의11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 ④ 시·도지사는 법 제34조의1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조치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예찰 : 대상지역, 기간, 인원, 결과
  2. 출입통제·소독 등 : 대상지역, 기간, 소독시설 등 방역 조치
  3. 포획 또는 살처분 : 대상 지역, 대상 종, 포획 도구, 포획 실적 등
- ⑤ 시·도지사는 제44조의8제1항에 해당하는 야생동물 질병이 발생할 경우에는 법 제34조의12제1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에게 법 제34조의12제1항의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⑥ 그 밖에 서식지 내 야생동물 질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한다.

별표 1의 제8호나목18 “닷꽃”을 “참닷꽃”으로 한다.

별표 8의4 제2호나목1)가) 중 “2.5m”를 “1m”로 하고, 같은 1) 라)를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사체를 투입하고 토양으로 완전히 덮은 후 최종적으로 생석회를 살포한다.

별표 12 제1호다목1)부터 6)까지 외의 부분 후단 중 “법 제36조제1항제1호”를 “법 제34조의7제7항제1호, 법 제36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표 별표 12 제2호차목부터 타목까지를 각각 카목부터 파목까지로 하며, 같은 표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      |      |  |  |
|-----------------------------------------------|--------|------|------|--|--|
| 차.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 제34조의7 |      |      |  |  |
| 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 제7항    |      |      |  |  |
| 법을 위반한 경우                                     |        |      |      |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 지정취소 |      |  |  |
|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 경고   | 지정취소 |  |  |
| 3) 제4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 질병이 확인된 사실을 알면서도 알리지 아니한 경우 |        | 경고   | 지정취소 |  |  |
| 4) 제6항에 따라 야생동물                               |        | 경고   | 지정취소 |  |  |

|              |  |  |  |  |  |
|--------------|--|--|--|--|--|
| 의 질병진단 요령 등에 |  |  |  |  |  |
|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립 |  |  |  |  |  |
| 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  |  |  |  |  |  |
| 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 |  |  |  |  |  |
| 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  |  |  |  |  |

별표 12 제2호파목 및 하목을 각각 하목 및 거목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0호의4서식 중 “환 경 부 장 관”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제4항 중 “환경부”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으로 한다.

별지 제40호의5서식 및 별지 제40호의6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 ](재)수출 [ ]반출  
[ ]수입 [ ]반입 허가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7일 |
|------|-----|---------|

|     |               |                 |
|-----|---------------|-----------------|
| 신청인 | ① 상호(명 칭)     |                 |
|     | ② 성명(대표자)     | ③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     | ④ 주소(사업장 소재지) |                 |
|     | (전화번호: )      |                 |

|     |               |           |
|-----|---------------|-----------|
| 수입자 | ⑤ 상호(명 칭)     | ⑥ 성명(대표자) |
|     | ⑦ 주소(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

|     |               |           |
|-----|---------------|-----------|
| 수출자 | ⑧ 상호(명 칭)     | ⑨ 성명(대표자) |
|     | ⑩ 주소(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

|                |                                        |           |
|----------------|----------------------------------------|-----------|
| 해당<br>생물<br>명세 | ⑪ 보통명                                  | ⑫ 학명      |
|                | ⑬ 원산지(표본)                              | ⑭ 생산지(제품) |
|                | ⑮ 해당 부속서<br>[ ] I 급 [ ] II 급 [ ] III 급 | ⑯ 용도      |
|                | ⑰ 명세(규격)                               |           |
|                | ⑱ 선적항                                  | ⑲ 도착항     |
|                | ⑳ 품목번호(HS)                             | ㉑ 수량(단위)  |
|                | ㉒ 단가                                   | ㉓ 금액      |
|                | ㉔ 수출·반출·수입·반입예정일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수입등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유역 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귀하

|               |                                                        |             |
|---------------|--------------------------------------------------------|-------------|
| 신청인<br>제출서류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각 1부 | 수수료<br>10만원 |
| 담당공무원<br>확인사항 | 수입신고확인증 사본(다른 법령에 따라 수입신고확인증을 대체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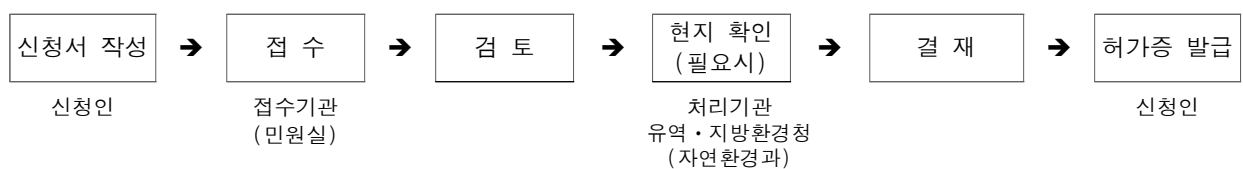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작성방법

1. ④란, ⑦란 및 ⑩란에는 개인인 경우에는 거주지 주소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장 주소를 적습니다.
2. ⑪란부터 ⑬란까지 및 ⑮란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국에서 발행한 수출증명서 또는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적습니다.
3. ⑬란의 원산지는 국제적 멸종위기종(표본)의 생장지를, ⑭란의 생산지는 상품으로 가공된 경우 생산지를 적습니다.
4. ⑯란은 세분하여 적습니다.  
(예: 수입의 경우 - 가공후 수출용, 국내 판매용 등  
수출의 경우 - 건본, 기증, 무역거래 등)
5. ⑰란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성별·크기 및 살아 있는지의 여부, 야생·사육(재배) 여부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6. 해당 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절차



##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수입등 허가서 (CITES permit)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OR FLORA

|                                                                                                                                                                                                                                                                                                                                                                                         |                                                                                                                              |
|-----------------------------------------------------------------------------------------------------------------------------------------------------------------------------------------------------------------------------------------------------------------------------------------------------------------------------------------------------------------------------------------|------------------------------------------------------------------------------------------------------------------------------|
| 1. 허가번호<br>Original Permit/Certificate No.<br>R.O.K                                                                                                                                                                                                                                                                                                                                     |                                                                                                                              |
| 2. 유효기간<br>Valid until                                                                                                                                                                                                                                                                                                                                                                  |                                                                                                                              |
| [ ] 수출 EXPORT                      [ ] 재수출 RE-EXPORT<br>[ ] 수입 IMPORT                      [ ] 기 타 OTHER                                                                                                                                                                                                                                                                                |                                                                                                                              |
| 3. 수입자: 성명·주소·국명<br>Importer : Name and address, country                                                                                                                                                                                                                                                                                                                                | 4. 수출자/재수출자: 성명·주소·국명<br>Exporter/re-exporter : Name and address, country                                                    |
| 3a. 목적지<br>Country of destination                                                                                                                                                                                                                                                                                                                                                       | 4a. 신청인: 성명·주소·국명<br>Permittee : Name and address, country                                                                   |
| 5. 특별사항 Special conditions<br><div style="text-align: center;">VALID FOR MULTIPLE SHIPMENTS.<br/>PERMITTEE TO RETAIN ORIGINAL</div> For live animals this permit or certificate is only valid if the transport conditions conform to the guidelines for transport of live animals or plants, in the case of air transport, the IATA live animals Regulation                             |                                                                                                                              |
| 5a. 거래목적(뒷면참조)<br>Purpose of the transaction(see reverse)                                                                                                                                                                                                                                                                                                                               |                                                                                                                              |
| 7\8. 학명(속명·종명) 및 통속명<br>Scientific name(genus and species) and<br>Common Name of Animal or Plant                                                                                                                                                                                                                                                                                        | 9. 표본 기재<br>(산동물의 경우: 성별·연령)<br>Description of specimens, including<br>identifying marks or numbers(age<br>and sex if alive) |
| 10. 부속서 번호 및 출처<br>(뒷면참조)<br>Appendix No. and source<br>(see reverse)                                                                                                                                                                                                                                                                                                                   |                                                                                                                              |
| 11. 표본수량(단위포함)<br>Quantity(including unit)                                                                                                                                                                                                                                                                                                                                              |                                                                                                                              |
| 11a. 총수출 쿼타량<br>Total exported Quota                                                                                                                                                                                                                                                                                                                                                    |                                                                                                                              |
| 12. 원산지★<br>Country of origin                                                                                                                                                                                                                                                                                                                                                           |                                                                                                                              |
| 12a. 최종재수출국<br>Country of last re-export                                                                                                                                                                                                                                                                                                                                                |                                                                                                                              |
| 허가번호 Permit No.                      날짜 Date                                                                                                                                                                                                                                                                                                                                            |                                                                                                                              |
| 허가번호 Certificate No.                      날짜 Date                                                                                                                                                                                                                                                                                                                                       |                                                                                                                              |
| ★생물이 야생에서 포획·채취되거나 포획사육 또는 인공번식된 국가(재수출의 경우)<br>Country in which the specimens were taken from the wild, bred in captivity or artificially propagated(only in case of re-export)<br>★★상업목적으로 포획사육 또는 인공번식된 부속서 I의 생물에 한합니다. Only for specimens of Appendix I species bred in captivity or artificially propagated for commercial purposes.<br>★★★협약 이전의 표본 For pre-Convention specimens |                                                                                                                              |
| 13. 허가서 발급기관 This Permit/certificate is issued by:                                                                                                                                                                                                                                                                                                                                      |                                                                                                                              |
| 장소 Place                                                                                                                                                                                                                                                                                                                                                                                | 날짜 Date                                                                                                                      |
| 날인 및 서명 Security stamp, signature and official seal                                                                                                                                                                                                                                                                                                                                     |                                                                                                                              |
| 14. EXPORT ENDORSEMENT:                                                                                                                                                                                                                                                                                                                                                                 |                                                                                                                              |
| 15. 선하증권\항공화물운송장번호 Bill of Loading/Airway-Bill Number                                                                                                                                                                                                                                                                                                                                   |                                                                                                                              |
| See block 7                                                                                                                                                                                                                                                                                                                                                                             | Quantity                                                                                                                     |
| A                                                                                                                                                                                                                                                                                                                                                                                       |                                                                                                                              |
| B                                                                                                                                                                                                                                                                                                                                                                                       |                                                                                                                              |
| C                                                                                                                                                                                                                                                                                                                                                                                       |                                                                                                                              |
| 수출항<br>port of exportation                                                                                                                                                                                                                                                                                                                                                              | 날짜<br>Date                                                                                                                   |
| 서명<br>Signature                                                                                                                                                                                                                                                                                                                                                                         | 날인<br>Official seal and title                                                                                                |

## 작성 방법

1. 문서의 종류에 맞게 사각형에 표시(수출 허가서, 재수출 증명서, 수입 허가서 및 기타), 기타란에 표시할 경우 문서의 종류를 명시할 것, 허가번호는 관리당국에 의해 각 문서에 부여된 고유 번호입니다.
2. 수출 허가서와 재수출 증명서의 경우 문서의 만료일이 문서 발행으로부터 6개월까지입니다(수입허가서는 1년). 다만, 매 당사국 총회 결과 등급변경이 결정된 종의 경우 수출입 허가서의 만료일은 동 협약 발효일 전까지입니다.
3. 수입자의 성명과 주소·국가명을 적습니다.
  - 3a. 국가명은 공식명칭을 적습니다.
  4. 수출자의 성명·주소·국가명을 적습니다.
  - 4a.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국가명을 적습니다. 신청인의 서명이 없는 경우 허가서는 무효입니다.
5. 특별사항에는 국가법률이나 허가서 발급 관리당국의 선적관련 특별조항이 언급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은 특정정보 생략의 정당화를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5a. 사용되는 코드: T-상업용, Z-동물원용, G-식물원용, Q-서커스 및 순회전시(공연)용, S-과학 연구용, H-수렵기념품, P-사적사용, M-의학용, E-교육용, N-야생용, B-포획사육 또는 인공번식용, L-법집행·법의학용
6. 허가서 발급 관리당국의 이름·주소·국가로 미리 인쇄되어 있어야 합니다.
- 7./8. 협약 부속서나 당사국 총회에서 인정된 참고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생물의 학명(속명·종명·아종명)과 허가서 발급국가의 생물 통속명 적습니다.
9. 거래되는 표본을 가능한 정확하게 기입(산동물, 가죽, flanks, 지갑, 신발 등), 만약 표본에 표지가 되어 있다면(태그, 식별표지, 가락지 등) 그것이 당사국 회의 결정서에 의해 요구되는 표본(목장사육을 위한 표본, 당사국 총회에서 허가된 할당량에 필요한 표본, 상업목적용 위해 포획사육된 부속서 I에 기재된 종의 표본)이던 아니던 표지의 종류와 번호를 기입, 산동물의 경우 가능하면 성별과 연령을 적습니다.
10. 해당종이 들어있는 협약부속서 번호(I, II 또는 III)를 적습니다.
 

출처에 사용되는 코드

  - W 야생의 표본
  - R 목장의 표본
  - D 상업목적으로 포획사육된 부속서 I 기재표본으로서 CITES 규정 제7조제4항에 의거 수출한 표본(부분품, 완제품 포함)
  - A 식물의 경우는 CITES 규정 제7조제5항 및 제11차 당사국 회의 결정서(Conf. 11. 11)에 따라 인공재배한 표본(상업 목적으로 인공재배하지 않은 부속서 I, II, III 기재표본, 부분품, 완제품 포함)
  - C 동물의 경우는 CITES 규정 제7조5항 및 제10차 당사국 회의 결정서(Conf. 10. 16)에 따라 인공사육한 표본(상업 목적으로 인공사육하지 않은 부속서 I, II, III 기재표본, 부분품, 완제품 포함)
  - F 인공사육환경에서 출생한 동물(제2세대 또는 그 자손)로서 제10차 당사국 회의 결정서(Conf. 10. 16)에서 정의한 "포획사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표본
  - Y 지원 생산(assisted production)을 통해 확보된 식물, 그 부분 및 파생물로서 제18차 당사국 총회 수정 결정서(Conf. 11. 11(Rev CoP18))를 만족하는 표본
  - U 출처미상 표본(정당한 사유 설명)
  - I 몰수 또는 압류된 표본
  - O 사전 협약된 표본(다른 출처코드와 함께 사용가능)
11. 수량과 단위는 Guidelines for the preparation and submission of annual reports의 최신판을 따라 적습니다.
  - 11a. 허가서의 표본을 포함한 해당연도의 수출 표본 총수와 그 종의 해당연도의 할당량을 기입(예. 500/1000)하되, 이것은 당사국 총회에서 결정된 국가당 할당량과 맞아야 합니다.
12. 생물이 야생에서 포획되거나 포획사육 또는 인공번식된 국가. 수출국의 허가번호와 허가서 발급일을 적되, 전체나 부분적인 정보를 모른다면 5란에 이에 대한 사유를 적고, 이 난은 재수출의 경우에 적어야 합니다.
  - 12a. 이 문서를 발급하는 국가에 표본을 재수출한 최종 재수출국, 최종 재수출국의 재수출 허가서 번호와 그 허가서 발급일을 기입, 전체나 부분적인 정보를 모른다면 5란에 이에 대한 사유를 기입하되, 이 난은 이전에 재수출된 표본이 재수출될 경우 기입해야 합니다.
13. 허가서 발급 기관이 기입, 기관명은 공식명칭으로 기입하되, 이 난에는 반드시 날인을 하여야 하고, 취소는 허가서 발급기관의 서명에 의하여야 하며, 날인·서명·날인번호는 알아보기 쉽게 명확히 기입하여야 합니다.
14. 수출 또는 재수출시 선적 조사 기관이 적고, 수출 또는 재수출되는 표본의 수량을 기입하며, 사용하지 않는 난은 삭제합니다.
15. 운송수단에 따라서 선하증권번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번호를 적습니다.
 

이 문서는 협약에서 통용되는 세가지 언어(영어, 스페인어, 불어)중 하나로 쓰여지거나 다른 언어로 번역될 경우 세 언어중 한 가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수출 또는 재수출되지 않은 표본을 같은 문서 내에서 수출 또는 재수출 표본으로 나타내서는 안됩니다.

이 문서를 사용 후에는 반드시 수입국의 관리당국으로 반납하여야 합니다.



## 예 방 접 종 · 격 리 · 이 동 제 한 · 출 입 제 한 · 살 처 분 명 령 서

제 호

|                |    |           |  |  |       |  |
|----------------|----|-----------|--|--|-------|--|
| 기관 또는 단체       |    | 기관 또는 단체명 |  |  |       |  |
|                |    | 소재지       |  |  |       |  |
| 대표자            |    | 성명        |  |  | 생년월일  |  |
|                |    | 주소        |  |  | 전화번호  |  |
| 명령의 내용         |    | 조치 명령     |  |  | 해당 질병 |  |
|                |    | 대상지역      |  |  | 이행기간  |  |
| 대상<br>야생<br>동물 | 종류 |           |  |  |       |  |
|                | 수량 |           |  |  |       |  |
| 준수사항           |    |           |  |  |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0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8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방접종·격리·이동제한·출입제한·살처분할 것을 명합니다.

년 월 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직인

### 유의사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0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격리·이동제한·출입제한·살처분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0조제9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br>행                                                                                                                                         | 개<br>정<br>안                                                                                                                      |
|------------------------------------------------------------------------------------------------------------------------------------------------|----------------------------------------------------------------------------------------------------------------------------------|
| 제44조의5(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 등) ① 법 제34조의7 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의4호서식의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u>환경부장관</u>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4조의5(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 등) ① -----<br>-----<br>-----<br>-----<br>-----<br>-----<br>-- <u>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u><br><u>장</u> -----<br>--. |
| 1. ~ 4. (생략)                                                                                                                                   | 1. ~ 4. (현행과 같음)                                                                                                                 |
| ② <u>법 제34조의4제6항</u> 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8의3과 같다.                                                                                       | ② <u>법 제34조의7제8항</u> -----<br>-----<br>-----.                                                                                    |
| ③ <u>환경부장관</u> 은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별지 제40의5호서식의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서에 진단대상 질병 또는 검사항목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③ <u>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u><br><u>장</u> -----<br>-----<br>-----<br>-----<br>-----.                                                     |
| ④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서에 기재된 진단대상 질병 또는 검사항목의 변경을 <u>환경부장관</u> 에게 요청할                                                                       | ④ -----<br>-----<br>-----<br>-----<br>----- <u>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u>                                                                    |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지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진단대상 질병 또는 검사항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변경된 내용을 기재한 지정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제44조의7(역학조사) ① 법 제34조의9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립환경과학원

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서 야생동물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야생동물 질병이 야생동

기관장-----  
-----.

⑤ -----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  
장은 -----  
-----.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  
장-----  
-----.

제44조의7(역학조사) ① 시·도지사는 법 제34조의9제1항-- 따라 ---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에 역학조사를 -----.

1.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서 야생동물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삭 제>

<삭 제>

물 치료기관이나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기술·장  
비 및 전문성의 부족으로  
역학조사가 곤란하다고 판  
단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야생동물 치료기  
관이나 야생동물 질병진단기  
관

가. 같은 시·도 안에서 야생  
동물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다른 시·도에서 발생한  
야생동물 질병이 해당 시  
·도의 행정구역과 역학적  
으로 연관성이 있다고 의  
심되는 경우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역학조사를 의  
뢰받은 기관은 즉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을 2인 이상 포함한 역학조사반  
을 편성하여 역학조사를 하여야

2. 같은 시·도 안에서 야생동  
물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삭 제>

<삭 제>

3. 다른 시·도에서 발생한 야  
생동물 질병이 해당 시·도의  
행정구역과 역학적으로 연관  
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② -----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  
기관-----  
-----  
-----

한다.

1. ~ 3. (생 략)

③ (생 략)

④ 제1항에 따라 역학조사를 의뢰받은 기관은 제3항에 따라 역학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역학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역학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44조의8(살처분 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가 법 제34조의10제1항 본문에 따라 살처분을 명하여야 하는 야생동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로 한다. 다만, 살처분 대상 야생동물이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동물 또는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이 확정된 경우에만 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

1. 2.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시·도지사 및 법 제34조의9제1항제3호에 따라 역학조사를 요청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 -- 시·도지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

제44조의8(예방접종·격리·출입제한·살처분 명령 등) ① ----  
----- 각 호에 따라 예방접종·격리·이동제한·출입제한·살처분-----  
----- 질병에 걸리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 ----  
-----  
-----  
-----  
-----  
-----.

1. 2.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4조의10제1항에 따른  
살처분 명령서는 별지 제40의6  
호서식에 따른다.

③ (생 략)

④ 시·도지사가 제1항부터 제3  
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살처분을  
명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과 시  
·도지사는 살처분 대상 야생동  
물의 사육시설 내 이동 제한·  
격리 치료 등의 조치를 통하여  
야생동물 질병의 중간 전파 또  
는 확산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  
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살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

<신 설>

② 법 제34조의10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할 경우에는 환경부장  
관과 시·도지사는 별지 제40의  
6호 서식의 예방접종·격리·  
이동 제한·출입 제한·살처분  
명령서에 따라 대상 장소, 기간  
등을 미리 해당 기관 또는 단체  
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  
----- 예방접종  
·격리·이동제한·출입제한·  
살처분-----.

⑤ -----  
-----  
-----  
----- 예방접종·  
이동제한·격리 -----  
-----  
-----  
-----  
-----.

⑥ 법 제34조의10 제2항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공  
무원”이란 영 제23조의4에 따른

<신 설>

제44조의10(주변 환경오염 방지조  
치) ①·② (생 략)

<신 설>

<신 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 또는 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말  
한다.

⑦ 그 밖에 예방접종·격리·이  
동제한·출입제한·살처분 명  
령에 관하여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4조의10(주변 환경오염 방지조  
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도지사는 동 조 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환경부장관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의12(서식지의 야생동물 질  
병 관리) ① 환경부장관과 시·  
도지사가 법 제34조의12제1항  
각 호에 따라 예찰·출입통제  
및 소독 등 확산 방지·포획 또  
는 살처분 조치의 대상이 되는  
야생동물은 제44조의8제1항에  
해당하는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야생동  
물로 한다.

②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법 제34조의12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할 수 있다.

1. 제34조의12제1항제1호에 따라 야생동물 질병 예찰을 위해 야생동물 서식지 등을 예찰지역으로 설정

2. 제34조의12제1항제2호에 따라 출입통제 등 확산 차단을 위해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

3. 제34조의12제1항제3호에 따라 야생동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야생동물의 포획을 위해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운영

③ 법 제34조의12제1항에 따라 조치한 경우에는 제44조의8제1항에 해당하는 질병에 감염된 야생동물의 사체는 제44조의9, 제44조의10 및 제44조의11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④ 시·도지사는 법 제34조의12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조치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예찰 : 대상지역, 기간, 인원, 결과

2. 출입통제·소독 등 : 대상지역, 기간, 소독시설 등 방역 조치

3. 포획 또는 살처분 : 대상 지역, 대상 종, 포획 도구, 포획 실적 등

⑤ 시·도지사는 제44조의8제1항에 해당하는 야생동물 질병이 발생할 경우에는 법 제34조의12제1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에게 법 제34조의12제1항의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서식지 내 야생동물 질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